

강원도립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

(제정) 2013-12-09 규정 제344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수·학습 지원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1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조의 결혼이민자
2.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제3조(학생생활 지원)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가족의 학생의 대학생활 지원
2. 다문화가족학생의 편의시설 지원
3. 다문화가족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생활상담 지원
4. 다문화의 이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
5. 기타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4조(장학금 지급)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회의) 다문화가족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지침)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2013. 12. 9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